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4선거구 출신 김용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량 있는 건축사가 공모전 입상 실적 건축물의 용도와
전혀 다른 건축물을 설계하여 입상 실적에 따른 설계역량이
해당 건축물에 전혀 발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무분별하게 공사감리자로 지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역량 있는 건축사의 설계역량이 실제 설계에 발휘될 수 있도록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때, 제출된 입상 실적의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의 3에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의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한 서류의 입상 실적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용도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